

[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6-146호]

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,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분사전통지서(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)를 2차례 이상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7. 14.

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



1. 건 명 : 처분사전통지서(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)
2. 근 거 :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,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붙임(공시송달자 명단 참조)
4. 공고기간 : 2026. 7. 14. ~ 2026. 7. 28. (15일간)
5. 의견제출안내 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(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)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(051-719-4504)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6.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고용보험수사관 차소영(Tel. 051-860-201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관련 공시송달 명단

(공고기간 : 2026. 7. 14. ~ 2026. 7. 28.)

연번	성함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송달불능 사유
1	박*수	72.6.1.	부산 영도구 절영로 (이하생략)	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	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○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- 2024. 9. 24.~2024. 10. 21.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2024. 10. 1.부터 사조산업(주)부산본부에서 취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4. 10. 21. 실업인정 신청 시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1일 분의 실업급여 1,325,180원을 부정수급함 [취업사실 미신고] ○ 총 반환명령액: 1,766,910원 - 부정수급액: 1,325,180원(=21일×63,104원) - 해당기간 반환액: 441,730원	수취인불명, 보관기관 경과